#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3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이재정·김한규·강유정

위성락 • 박홍배 • 강훈식

복기왕 • 백혜련 • 안태준

민홍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 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·유인·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,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 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·유인·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 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·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,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(안 제28조제4항, 제 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, "제7항"을 "제8항"으로 한다.

④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2조제4호가목1)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·유인·강요·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4조제1항제1호 중 "제28조제7항"을 "제28조제8항"으로, "제28조제10항"을 "제28조제11항"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1호 중 "제28조제7항"을 "제28조제8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28조제10항"을 "제28조제1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의2 중 "제28조제5항"을 "제28조제6항"으로 한다.

제58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가 제28조제5항 부터 제6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의 권유·유인·강요로 인하여 청소년이 제2조제4호가목1)에 따른 주류 를 음용하였다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책임은 면책한다.

제59조제1호 중 "제28조제7항"을 "제28조제8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제28조제10항"을 "제28조제1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의3 중 "제28조제5항"을 "제28조제6항"으로 한다.

제60조 중 "제28조제10항"을 "제28조제11항"으로 한다.

제6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)에 따른 주 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·유인·강요·방조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8조(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제28조(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·대여 등의 금지) ① ~ ③ ·대여 등의 금지) ① ~ ③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「식 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 을 하는 장소에서 제2조제4호 가목1)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 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・유인 · 강요 ·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 다. ⑤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7 ④ ~ ⑦ (생 략) 항까지와 같음)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 ⑨ 제7항-----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, 통보 시기, 통보 대상,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다.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, ⑩ 제6항-----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 -----제8항-----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・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① (생략) ① (현행 제10항과 같음) 제44조(수거·파기) ① 여성가족 제44조(수거·파기) ① ------

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 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 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.

- 1.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 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 (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
- 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45조(시정명령) ① 여성가족부 저장만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제13조제1항 및 <u>제28조제7항</u>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 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

1 <u>제28조제8항</u>
- <u>제28조제11항</u>
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∥45조(시정명령) ①
<u>.</u>
1제28조제8항

한 자

- 2. 제14조(<u>제28조제10항</u>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
- 3. ~ 7. (생략)
- 7의2. <u>제28조제5항</u>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·대여·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 니한 자
- 8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5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2. (생략)
  - 3.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)·
    5)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나목1)·2)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·대여·배포(자동기계장치·무인판매장치·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·대여·배포한 경우를 포함한

2	<u>제28조제11항</u>
	· ~ 7. (현행과 같음)
192 	2. <u>제28조제6항</u>
8. (	 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
제58조 	도(벌칙) 
1. · 3.	 2. (현행과 같음) 

## 다)한 자 <단서 신설>

4. ~ 6. (생략)

제5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3조제1항 및 <u>제28조제7항</u>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4조(<u>제28조제10항</u>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

	<u>다만, 「식품위생법」</u>
	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
	자가 제28조제5항부터 제6항
	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
	도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의
	권유・유인・강요로 인하여
	청소년이 제2조제4호가목1)에
	따른 주류를 음용하였다면 식
	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책임은
	면책한다.
4.	~ 6. (현행과 같음)
제59	9조(벌칙)
_	
1.	제28조제
	<u> 8항</u>
2.	<u>제28조제11항</u>

3. ~ 7의2. (생 략)

8. • 9. (생략)

제60조(벌칙) 제15조(<u>제28조제10</u>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 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 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제6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8.•9. (현행과 같음)
제60조(벌칙) <u>제28조제11</u>
৳
제6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·2. (현행과 같음)
, _ , .
3.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
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)에
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
는 것을 권유·유인·강요·

3. ~ 7의2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략)

방조한 자

③ (현행과 같음)